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4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2월 17일

나. 제안자 : 이종숙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 3. 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숙 의원)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사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노래연습장사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교육 운영, 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교육의 유예, 불참자 관리,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0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제36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2021. 2. 19. ~ 2. 24.)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제정 취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위임 법률 근거와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신규 등록자 포함)의 교육 내용을 명시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제도변경 사항 등 교육
-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계획의 수립, 운영, 이수자 관리 등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안 제7조까지)

- 효과적인 교육실시와 관리를 위하여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일시 및 장소, 내용 및 방법 등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운영 시기와 교육이수에 따른 대상업소 및 이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명시

○ 교육의 유예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천재지변, 질병, 휴업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유예 가능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

○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9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2.18.‘21.1.1. 시행)」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관련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래연습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③ 삭제 <2018. 2. 21.>

④ 삭제 <2018. 2. 21.>

⑤ 삭제 <2018. 2. 21.>